

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4조(환급등 신청인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</p>	<p>제4조(환급등 신청인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기타 입증자료 등 (별도용지에 추가 가능)

④ · ⑤ (생략)

제15조의3(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)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 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·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38조(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 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) ① · ② (생략)

③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

-----  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그 밖의 -----  
-----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3(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5년 -----.

제38조(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 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○ 법 개정사항(§14①)에 따라,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(2년 → 5년)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

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67조(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선박(항공기) 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「관세법」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간이정액환급률표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67조(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○ 조문 정비

○ 준용 규정 명확화

재에 관한 사항은 「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장 및 제34조, 「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.

제10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 2의4]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(제15조의5 관련)

1. 작성방법

----- 「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2조부터 제14조, 제29조부터 제31조 -----  
-----  
-----.

제104조(재검토기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3년 1월 1일 -----  
-----  
----- 12월 31일-----  
-----.

[별표 2의4]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(제15조의5 관련)

1. 작성방법

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○ 법 개정사항(§14①)에 따라,

-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·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
- 과다환급금(가산금액 포함) 징수 고지일 자가 2011.12.20.이고,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12.1.5.이며,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12.2.10.인 경우에는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 2012.1.5.을 기준으로 2012.1.6.부터 2014.1.5.까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, 2014.1.5.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급신청할 수 있음
- 과다환급금 고지 후 누락된 가산금액을 별도로 고지함에 따라 과다환급금 수납일자는 2012.1.5.이고 가산금액의 수납일자가 2012.1.10.인 경우에는 추가환급과 관련된 해당 가산금액의 지급신청은 2012.1.10.을 기준으로 함
-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·납부한 후,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과다환급금의

-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·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
- 과다환급금(가산금액 포함) 징수 고지일 자가 2021.7.20.이고,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21.8.5.이며,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21.9.10.인 경우에는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 2021.8.5.을 기준으로 2021.8.6.부터 2026.8.5.까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, 2026.8.5.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급신청할 수 있음
- 과다환급금 고지 후 누락된 가산금액을 별도로 고지함에 따라 과다환급금 수납일자는 2021.8.5.이고 가산금액의 수납일자가 2021.8.10.인 경우에는 추가환급과 관련된 해당 가산금액의 지급신청은 2021.8.10.을 기준으로 함
-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·납부한 후,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과다환급금의

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 
(2년 → 5년)

<p>가산금액 중 추가환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○ 지급신청인은 음영이 없는 부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가산금액 중 추가환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○ 지급신청인은 음영이 없는 부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.</p>	
---	---	--